

2026년 제 11 차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 발 신 : 조 합 장 (2026. 05. 29)

○ 수 신 : 이사 및 감사 제위

○ 제 목 : 2026년 제 11 차 이사회의 소집 통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를 소집하오니 이사, 감사님께서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06. 04(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조합사무실 [유성구 계룡로 43 (봉명동) 6층]

○ 참석대상 : 이사 및 감사 전원

○ 회의안건

□ 보고 사항

□ 부 의 안 건

제 1 호 안건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제 2 호 안건 이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

제 3 호 안건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 4 호 안건 원인자 부담금 감면용역 업체 선정 입찰의 건

제 5 호 안건 소방통신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

제 6 호 안건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건축, 소방 분담이행방식)

제 7 호 안건 임시상가 전기 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제 8 호 안건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제 9 호 안건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

제 10 호 안건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

제 11 호 안건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

기타 안건

붙임 : 회의자료 (당일 배부) 끝.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직인 생략)

제 1 호 안 건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 안 건 상 정

「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2026. 5. 14 제8차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한 입찰 결과 총 4개사가 입찰하였고, 점수 상위 3개사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다득표로 선정하며,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 입찰 결과 비교 요약표

구분	기호 1 법무법인 (유)현	기호 2 법무법인 (유)강남	기호 3 법무법인 고원	법률사무소 정비
자기평가 점수	97	81	50	48
착수금 (VAT 별도)	1인당 금 1,500,000	1인당 금 1,600,000	1인당 금 2,000,000	1인당 금 1,800,000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의 5.0%	경제적 이익의 5.5%	경제적 이익의 7.0%	경제적 이익의 10.0%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비교표
- 입찰자 가격제안서, 자기평가서

첨부 -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입찰비교표

항 목		평가기준	배점	기호 1 법무법인 (유)현		기호 2 법무법인 (유)강남		기호 3 법무법인 고원		법률사무소 정비	
				평가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점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이상	5	17년	5	13년	5	10년 이상	5	15년	5
		10년미만 ~ 5년이상	3								
		5년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이상	5	329 억원	5	약 312 억원	5	13억	1	약 75억 원	1
		300억미만 200억원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11.3 억	10	10억 2천	10	3억	4	-	-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73명	5	123 명	5	8명	1	9명	1
		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 사	10명 이상	5	11명	5	10명	5	4명	1	7명	3
		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91건	7	17건	4	9건	4	25건	4
		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7건	10	3건	7	0건	4	5건	4
		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50		47		41		20		18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25	20	15	15				
		2순위	20								
		3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5	20	15	15				
		2순위	20								
		3순위 기타	15								
합 계			50	97	81	50	48				

첨부 - 법무법인(유)현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붙임 6>

장대B 변호사선정 입찰가격 제안서 자기평가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착 수 금	1인당 금 <u>백오십만 원</u> (\1,500,000)	-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해당 착수금을 각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성 공 보 수	경제적 이익의 <u>오점영%</u> (5.0%) ※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작성	- 발주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과보수는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1회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p>장대B구역 입찰에 위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p> <p>※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련 비용은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법무법인(유한) 현 대표자 : 김경태</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p>		

<붙임 7>

장대B 변호사선정 적격심사/자기평가서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상 호 : 법무법인(유한) 현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입찰자 기재		비고
				평 가	점 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 이상	5	17년	5	
		10년 미만 5년 이상	3			
		5년 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5	329억	5	
		3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11.3억	10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73명	5	
		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10명 이상	5	11명	5	
		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91건	7	
		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7건	10	
		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47점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	/	발주자 작성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합 계						


- '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조합, 신탁사)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 소송(사업경비 부과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을 말한다.

2026년 5월 21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첨부 - 법무법인(유)강남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붙임 6>

장대B 변호사선정 입찰가격 제안서 자기평가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착 수 금	1인당 금 <u>일백육십만 원</u> (\1,600,000)	-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해당 착수금을 각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성 공 보 수	경제적 이익의 <u>오점오 %</u> (5.5%) ※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작성	- 발주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과보수는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1회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p>장대B구역 입찰에 위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p> <p>※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련 비용은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법무법인(유한)강남 대표자 : 김 재 영</p> <p style="text-align: center;">(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p>		

장대B 변호사선정 적격심사/자기평가서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상 호 : 법무법인(유한)강남 (인)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입찰자 기재		비고
				평 가	점 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 이상	5	13년	5	
		10년 미만 5년 이상	3			
		5년 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5	약 312억	5	
		3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10억 2천	10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123명	5	
		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10명 이상	5	10명	5	
		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17건	4	
		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3건	7	
		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	/	발주자 작성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합 계						

- '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조합, 신탁사)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 소송(사업경비 부과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을 말한다.

2026년 5월 21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붙임 6>

장대B 변호사선정 입찰가격 제안서 자기평가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착 수 금	1인당 금 <u>이백만</u> 원 (\ 2,000,000)	-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해당 착수금을 각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성 공 보 수	경제적 이익의 <u>칠점영</u> % (<u>7.0</u> %) ※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작성	- 발주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과보수는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1회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p>장대B구역 입찰에 위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p> <p>※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련 비용은 미포함</p> <p style="margin-top: 20px;">2026년 5월 20일</p> <p style="margin-top: 20px;">상 호 : 법무법인 고원 대표자 : 이 공 재</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p>		

<붙임 7>

장대B 변호사선정 적격심사/자기평가서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상 호 : 법무법인 고원 (인)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입찰자 기재		비고
				평 가	점 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 이상	5	10년 이상	5	
		10년 미만 5년 이상	3			
		5년 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5	13억	1	
		3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3억	4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8명	1	
		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10명 이상	5	4명	1	
		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9건	4	
		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0건	4	
		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발주자 작성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합 계						


- '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조합, 신탁사)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 소송(사업경비 부과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을 말한다.

2026년 5월 20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첨부 - 법률사무소 정비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붙임 6>

<p style="text-align: center;">장대B 변호사선정 입찰가격 제안서</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자기평가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p>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착 수 금	1인당 금 <u>일백팔십만 원</u> (\ 1,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해당 착수금을 각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성 공 보 수	경제적 이익의 <u>십점 영 %</u> (<u>10.0 %</u>) ※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과보수는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1회 지급 - 부가가치세 별도
<p>장대B구역 입찰에 위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p> <p>※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련 비용은 미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2026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자 : 운영현</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p>		

장대B 변호사선정 적격심사/자기평가서

입찰가격 제안서와 같이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상 호 : 법률사무소 정비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입찰자 기재		비고
				평 가	점 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 이상	5	15년	5	
		10년 미만 5년 이상	3			
		5년 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 이상	5	약75억원	1	
		3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	-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9명	1	
		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10명 이상	5	7명	3	
		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25건	4	
		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5건	4	
		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	/	발주자 작성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 순위	20			
		3 순위 기타	15			
합 계						

- '소송'이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조합, 신탁사)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 소송(사업경비 부과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을 말한다.

2026년 5월 21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제 2 호 안 건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

■ 안 건 상 정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2025. 03. 13 설계변경 추진에 대한 총회 의결, 2026. 02. 07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의결에 근거하여 변경 추진하였고 2026. 4. 17 변경인가 접수하여 변경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 최초 인가시부터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V.E, 최초 인가시의 면적 증가, 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라 유선건축사, 진양건축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경위

구 분	연면적	금액 (원, 부가가치세별도)	비 고
최초 2019.11.15	508,926 m ² (153,950 평)	금 7,888,357,340원	
변경 2023.05.31	683,016 m ² (206,612 평)	금 8,793,347,340원	건축물안전평가 금 905,000,000 증액
금회 변경	625,127 m ² (189,101 평)	금 13,167,624,585원	기인가 면적증가, 시공사 V.E 협업 설계변경, 풍동실험 모형제작 2건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변경 계약서(안)
- 용역비 청구 공문

첨부 - 변경 계약서(안)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변경 계약서

- 계약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 구역 면 적 : 97,028㎡
- 연면적/규모 : 625,127.4700㎡ / 지하 6층, 지상 5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용 도 : 공동주택 2,5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외
- 용 역 기 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 완료시까지
- 계약 금 액 : 금13,167,624,585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 보증금 : 금652,331,029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율 55.1974%)

※ 본건 계약 연면적은 2024. 7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2026. 4월 변경 인가를 접수한 연면적이며, 최종적으로 준공인가 연면적에 단가(W15,500원/㎡)를 곱한 후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 영 돈(이하 “을1”이라 한다), (주)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 병 채(이하 “을2”라 하며, “을1”과 “을2”를 총칭하여 “을”이라 한다)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이행하기로 하고 본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그 증거로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첨부 1. 기존 2019. 11. 15 계약서
- 2. 기존 2023. 05. 31 계약서

2026년 05월 일

“갑” 상 호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605호 (봉명동, 유성신협신사옥)

“을1” 상 호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 영 돈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422
면허번호 : 제10727호 등록번호 : 120-81-97884

“을2” 상 호 : (주)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 병 채 (인)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7, 5층(가락동, 진양빌딩)
면허번호 : 제10452호 등록번호 : 215-86-29388

제1조 (총 칙) 본건 계약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사업시행 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정비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경 용역대가와 지급 방법 변경)

- ① 본건 변경 용역대가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2019. 11.15 계약금액 금7,888,35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 2023. 05.31 계약금액 금8,793,34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물안전평가 금905,000,000추가)
- 최초계약 연면적 508,926㎡ /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683,016㎡ /설계 변경접수 면적 625,127㎡

구 분	금액 (원)	비 고
A. 본건 계약 전 기지급금액	5,366,514,404	(A + B)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제외
B. 최초 사업시행인가 면적증가 정산 금액	1,619,034,396	
C. 설계변경비	2,034,788,385	(C + D)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 설계변경비는 최초계약의 사업시행인가금액에서 연면적 증가부분을 합하여 70% 변경 요율을 산정함. - 공동실험 모형제작 2건 포함
D. 설계변경 인가 후 용역대가 잔액	4,147,287,400	
C + D	6,182,075,785	
합 계	13,167,624,585	VAT 별도

② 본건 변경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1” 51%, “을2” 49%를 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구 분	금액 (원)					비 고
	공공주택설계	건축물안전평가		합계		
A. 본건 계약 전 기지급금액	-	4,733,011,800	70%	633,500,000	5,366,511,800	B는 본건 계약시 지급
B. 최초 사업시행인가 면적 증가 정산 금액	-	1,619,037,000			1,619,037,000	
C 설계 변경비	C-1 본건 변경 계약시	16.5 %			1,017,394,193	설계변경비 2회 분할 지급하며 C-1은 본건 계약시 지급
	C-2 사업시행 변경 인가 후	16.5 %			1,017,394,192	
	소 계				2,034,788,385	
D 설계 변경 인가 후 용역 대가 잔액	구조 전문위원히 통과 후	2.9 %	0	20%	181,000,000	- 준공인가란 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승인은 제외함.
	실시도서 납품시	39.2 %	2,422,367,125		2,422,367,125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후	9.3 %	484,473,425	10%	90,500,000	-정비기반시설공사 완료가 공동주택 사용승인보다 늦을 경우 마지막대가의 5%를 지급 유보함.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7.8 %	484,473,425		484,473,425	
	준공 인가 후	7.8 %	484,473,425		484,473,425	
	소 계		3,875,787,400		271,500,000	
C + D	100	5,910,575,785		271,500,000	6,182,075,785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총 합 계 (A + B + C + D)		12,262,624,585		905,000,000	13,167,624,585	과세율 55.1974%

제3조 (계약이행의 보증)

① 기존 계약이행보증금은 “갑”과 계약 해지된 사업대행자가 피보험자로서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날과 2026년 12월 31일 빠른날 시효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본건 변경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보증서로 대체하되 본건 계약의 최초 계약이행보증기간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을”은 금액의 변경, 기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만기도래일 15일 전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보증서를 추가하거나 보증 기간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을”이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을”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하며, 지체하는 경우 위약별로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이행보증 범위 총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서 1일당 3/1000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조 (특약사항)

① 본건 변경 계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서에 따르며, 기존 계약서에서 정해진 사업대행자에 대한 의무, 책임은 “을”이 포괄 승계하고, 권리는 기존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하여 “갑”이 포괄 승계한다.

② 본건 계약 체결 후 “갑”의 변경(조합장 및 임원의 변경), “을”의 변경(대표자의 변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변경 시에는 계약의 갱신없이 변경 당사자가 계약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끝.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615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2, 302(삼성동, 원경빌딩) TEL. 82. 2. 3147.3319 FAX.82. 2. 3147. 3099

문서번호 : 유선 제2026- 05 - 046 호

시행일자 : 2026. 05. 29.

수 신 : 장대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 변경계약 및 기성청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과 수행중인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과 관련하여 ① 최초 사업 시행인인가 후 면적증가 정산, ② 시공자 현대건설과의 V.E 협업 ③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기존 계약 대비 70% 금액에 공동실험 모형제작 2건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요청드리며, 금회기성을 청구하오니 검토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 약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나. 총계약금액 : 일금 일백삼십일억육천칠백육십이만사천오백팔십오원정(₩13,167,624,585)-VAT별도

다. 신청 금 액 : 일금 이십칠억팔천백구십오만오천이천오백구십이원정(₩ 2,781,952,592원)-VAT포함 (vat포함)

구 분		유선(51%)	진양(49%)	합 계	비고	
금회 청구액	최초 인가 면적 증가분	면세 공급가	369,938,447	355,431,057	725,369,504	
		과세 공급가	455,769,095	437,895,797	893,664,892	과세 55.1974%
		VAT	45,576,909	43,789,580	89,366,489	
		소 계	871,284,451	837,116,434	1,708,400,885	
	설계변경 계약시	면세 공급가	232,467,716	223,351,335	455,819,051	
		과세 공급가	286,403,322	275,171,820	561,575,142	과세 55.1974%
		VAT	28,640,332	27,517,182	56,157,514	
		소 계	547,511,370	526,040,337	1,073,551,707	
	합 계		1,418,795,821	1,363,156,771	2,781,952,592	

※ 본 변경계약

라. 입금 계좌:국민은행 (818-25-0022-190)예금주: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KEB하나은행 (173-890043-68204)예금주 :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첨부 : 1. 변경계약 요청금액 산출근거 별첨

· 2. 업체별 통장 사본 각1부.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제 3 호 안 건

도로공사 도급 계약 체결의 건

■ 안 건 상 정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사업체로 선정된 일성종합건설(주)와 첨부와 같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 : 일성종합건설(주)
- 도급금액 : 금6,73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공사도급 계약서(안)

제 4 호 안 건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시설의 이전등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관리청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본 용역을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제 5 호 안 건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사이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사품질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 토목 및 전기감리자는 자치구인 유성구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조합이 계약을 하고, 소방,통신감리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정 계약합니다.

- 이에 따라, 소방, 통신 감리자를 소방성능설계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른 배치	소방성능설계 심의 의견
- 책임감리 : 기술사 1인 - 보조감리 : 5인 (초급 가능) -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마다 보조감리원 1인을 배치	- 책임감리 : 기술사로서 초고층건축물 준공경험자 - 보조감리 : 5인 (고급 이상) - 비상주감리지원 : 기술사 1인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제 6 호 안 건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우리 조합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인 유성5일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임시상가 및 임시 유성5일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에 임시상가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건축,소방공사업자를 공종별 분담이행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제 7 호 안 건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우리 조합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인 유성5일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임시상가 및 임시 유성5일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에 임시상가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건축, 소방과 분리하여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제 8 호 안 건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 안 건 상 정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유성구청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건물에 있는 에어컨을 누리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공개 매각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 물건

구 분	282-15 번지 지역협력센터	191-7 번지 유성장옥	비 고
시스템에어컨	49 EA	26 EA	총 개수 77 실외기 포함
스탠드에어컨	2 EA	-	
실외기	10 EA	옥상 대형 3 EA	
금 액	₩41,023,500	₩20,913,932	1개 평균 ₩804,382

※ 1. 2021년 설치 40EA (시스템 38/스탠드 2), 2021년 이전설치 37EA

- 예정가격 : ₩ 61,937,432 이상

(유찰시) 2차 공고 : ₩ 55,743,689 이상 (10% 차감)

(유찰시) 3차 공고 : ₩ 50,169,320 이상 (10% 차감)

- 3차 공고 유찰시 조합원 대상매각 등 처분방법과 금액을 이사회에 위임함.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부 서류

- 공고(안)

장대B 에어컨 매각 공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에어컨을 일괄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매각 물건

구분	282-15 번지 지역협력센터	191-7 번지 유성장옥	비고
시스템에어컨	49 EA	26 EA	총 개수 77 실외기 포함
스탠드 에어컨	2 EA	-	
실외기	10 EA	옥상 대형 3 EA	
금액	₩41,023,500	₩20,913,932	1개 평균 ₩804,382

※ 1. 2021년 설치 40EA (시스템 38/스탠드 2), 2021년 이전설치 37EA

3. 예정가격 및 대금 납부

- 예정 가격 : 금61,937,432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 납부 방법 : 계약시 40%, 이전시 60%

4. 입찰 방법

- 2026년 6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매입가격 제안서를 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입찰 자격 및 낙찰자 결정

- 법인, 개인사업자(만19세 이상) 제한없음
- 최고 가격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개별 통지 함.
- 계약서는 조합이 낙찰자 결정 후 조합이 작성함

6. 유의사항

- 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해체 공사중 조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조합 사용기한은 낙찰자와 별도 협의함.
- 조합의 사용기간 종료 후 낙찰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이전해야 함.

2026년 06월 00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직인 생략)

장대B 에어컨 일괄 매입가격 제안서

■ 상 호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제 안 가 격	금 _____ 원 (₩ _____) 부가가치세 별도

- 제안가격은 예정 가격 이상 금액이어야 함.
- 장대B 조합의 에어컨 일괄매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입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조합의 모든 매각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음.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제 9 호 안 건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

■ 안 건 상 정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우리조합 설계변경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후 종후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필요하여 유성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통보 받아 첨부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추정 수수료 예치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추정 수수료 (원)	비고
(주)하나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373,982,400	
(주)미래세한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373,982,400	
합 계	747,964,800	(vat포함)

- 평가수수료는 평가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가 예치 또는 차액 환불은 조합장에게 위임함.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문
- 장대B구역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서
- 감정수수료 추정액

첨부 -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문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우리구로 예치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기 관 명	연 락 처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하나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042-484-0701
	(주)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042-488-2161

끝.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주무관 **아래** 도시개발팀장 **박소봉** 도시계획과장 **심민호** 전결 2026. 5. 11.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649 (2026. 5. 11.) 접수
우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른동, 유성구청) / www.yuseong.go.kr
전화번호 042-611-2449 팩스번호 042-611-2468 / ynr2474@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유성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효율적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성구청장,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감정평가법인”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평가 업무로와 기타 “유성구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착수 요청】 이 약정이 체결된 후 “조합”은 평가의뢰 물건을 명시하여 “유성구청장”에게 평가업무 착수를 요청하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조합”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제4조【평가단위】 평가 단위는 계량법에 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감정평가서 제출】 ①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수성, 물량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울 때에는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감정평가법인”은 그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문서로 “유성구청장”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듣고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은 “유성구청장”의 요청 공문을 수령한 날의 익 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익 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휴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기한 계산에는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일로부터 서류 보완일까지의 일수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은 제2항의 기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 제출 시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지체 책임】 “**감정평가법인**”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당해 물건평가에 대한 감정보수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지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은 지체없이 “**유성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는 “**유성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인정된다.

제7조【감정평가 보수의 청구 및 지급】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는 감정평가서 제출과 함께 “**감정평가법인**”이 “**유성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 2023.09.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정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요율 체계 적용비율은 “**기준수수료**”로 책정하는 가격산출 근거자료·가치형성요인분석·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청장**”이 결정하되,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 가격산출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하여 2개의 법인이 평가하였을 때의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각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지급한다.**
- ③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수개의 필지를 일괄하여 의뢰할 때에는 수개의 물건(동산 포함) 모두의 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은 청구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여비의 지급】 출장일수 및 여비 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1. 출장여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일로 한다. 다만, 물량의 과다 및 물건의 성질상 필요하여 “**유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1건의 의뢰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복수 출장하였을 경우 1인이 출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산정하되, 의뢰물건이 물량과다 및 물건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1인이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유성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2인에 한하여 복수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출장일수 및 여비 산정에 있어 “**유성구청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견조회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은 문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청장**”은 제1항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① “**유성구청장**”이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을 불용인시에는 충분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객관성 있는 회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수량이 과다한 경우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은 제9조 제1항의 회신 기한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에 대한 회신문서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변경된 평가액에 따라 정산한다.

③ “**유성구청장**”은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시 “**조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 보수의 미지출】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계류 중일 때의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이의 사항의 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정평가 요청의 취소】 “유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의한 감정평가서 발송전에 약정서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한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취소에 따른 보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되, “유성구청장”, “감정평가법인”,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시 인지한 일체의 사항 및 감정평가액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성실의 의무】 “감정평가법인”은 수행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성구청장”이 해당 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송, 민원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면, 구두, 전화 포함)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장 상담 또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의 의무】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이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선정한 타 감정평가법인과 업무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상호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해소의 의무】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은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세입자·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의무】 ① “유성구청장”은 “조합”이 미리 예치한 감정평가 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합”에게 추가금액을 예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합”은 추가 예치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예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유성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조합”에게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감정평가법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발급 요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지조사 시 확인이 필요한 지점과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개별 물건에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유성구청장”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 “조합”이 본 약정서 이행을 협의한 날로부터 제7조에 따라 감정평가 보수의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단, 제14조 및 제16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약정의 취소, 선정대상 제외 및 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하였을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용의 하자 등으로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이 타 감정평가법인에 재차 감정하여 나타난 결과 “감정평가법인”의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유성구청장”이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서류에 허위기재 하였거나, 기타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때
 4. 기타 약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 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유성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성구청장”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감정 등 하자로 인하여 소송에 패소하여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약정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은 당해 정비사업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결과 주요한 민원(집단민원 등)의 발생이나 사업시행에 차질이 초래되었을 때
 2. 기타 본 약정서에 위반하여 경고 사유가 발생된 때
 3. “조합”이 감정평가 업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유성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이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유성구청장”은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에 따라 약정의 취소, 선정대상 제외, 경고 등의 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조치 전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의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유성구청장”은 의견 제출 내용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면책의 배제】 ①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은 “유성구청장”이 제19조에 따라 약정의 취소, 감정평가법인 선정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약정의 취소 또는 선정배제 사유로 발생하는 “감정평가법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약정의 취소 또는 선정을 배제하였다는 조건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본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조합의 사정변경으로 제2조의 업무가 추가될 경우 본건 계약 감정평가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유성구청장”, “감정평가법인”,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10. 2.

위 약정자

“유성구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명 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표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정용래 (인)

“감정평가법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36, 409호
 법인명 : (주)하나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 지사장 이현만 (인)

“감정평가법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06호
 법인명 : (주)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 지사장 이응기 (인)

“조 합”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1(장대동) 3층
 법인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조합장 임은수 (인)

[붙임]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추정액) 산정내역

감정평가액		1.0배분 평가액	0.8배분 평가액		총액
		128,275,628,880	1,822,004,778,000		1,950,280,406,880
기 초 평 가 수 수 료	평가가액	적용가액	수수료율	요율	산정금액
	5천만원까지	50,000,000	200,000	1.00	200,000
	5천만원초과~5억원까지	450,000,000	0.00110	1.00	495,000
	5억원초과~10억원까지	500,000,000	0.00090	1.00	450,000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4,000,000,000	0.00080	1.00	3,200,000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5,000,000,000	0.00070	1.00	3,500,00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40,000,000,000	0.00060	1.00	24,000,00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50,000,000,000	0.00050	1.00	25,000,000
	1,000억원초과~3,000억원까지	200,000,000,000	0.00040	1.00	80,000,000
	3,000억원초과~6,000억원까지	300,000,000,000	0.00030	1.00	90,000,000
	6,000억원초과~1조원까지	400,000,000,000	0.00020	1.00	80,000,000
	1조원초과	950,280,406,880	0.00010	1.00	95,028,041
	합 계	1,950,280,406,880			401,873,041
1. 평 가 수 수 료	1.0배분	$401,873,041 \times 128,275,628,880 / 1,950,280,406,880 = 26,432,361$			26,432,361
	0.8배분	$401,873,041 \times (1,822,004,778,000 / 1,950,280,406,880) \times 0.8 = 300,352,543$			300,352,543
	기초수수료 합 계				326,784,904
2. 실 비	여비	5일 x 40000원 x 1인			200,000
	조사비				-
	발급비				-
	기타	주거환경분석용역비(1/2)			13,000,000
	실비 합계				13,200,000
합 계		1.기초평가수수료 + 2.실비(천원미만 절사)			339,984,000
부가가치세		10%			33,998,400
총 계		합계 + 부가가치세			373,982,4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감정평가보수)		기 납부된 착수금을 제외한 감정평가보수 중 청구액			373,982,400

첨부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재평가 감정수수료 추정액



MS Your Valuation Partner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수 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참 조

제 목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추정액 제출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법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장대B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처분계획수립(변경)을 위한 종후자산(설계변경)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추정감정평가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회신합니다. 아울러, 최종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라 산정·확정되며 본건 추정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추정액 ◇

구 분	감정평가수수료(원)	부가가치세(원)	추정수수료 총액(원)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339,984,000	33,998,400	373,982,400
합 계	339,984,000	33,998,400	373,982,400

붙임 : 1) 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추정액) 산정내역 1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장



담당부서 감정평가팀

담당 감정평가사 문명성

시행 미래새한 충청0722605-0005호(2026. 05. 18)

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둔산동, 아너스빌 306) / <http://www.msapp.co.kr>

Tel 042-488-2161

Fax 042-488-2162

E-mail mrsh07@kapaland.co.kr

[붙임1]

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추정액) 산정내역

감정평가액		1.0배분 평가액	0.8배분 평가액		총액	
		128,275,628,880	1,822,004,778,000		1,950,280,406,880	
기 초 평 가 수 수 료	평가액	적용가액	수수료율	요율	산정금액	
	5천만원까지	50,000,000	200,000	1.00	200,000	
	5천만원초과~5억원까지	450,000,000	0.00110	1.00	495,000	
	5억원초과~10억원까지	500,000,000	0.00090	1.00	450,000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4,000,000,000	0.00080	1.00	3,200,000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5,000,000,000	0.00070	1.00	3,500,00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40,000,000,000	0.00060	1.00	24,000,00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50,000,000,000	0.00050	1.00	25,000,000	
	1,000억원초과~3,000억원까지	200,000,000,000	0.00040	1.00	80,000,000	
	3,000억원초과~6,000억원까지	300,000,000,000	0.00030	1.00	90,000,000	
	6,000억원초과~1조원까지	400,000,000,000	0.00020	1.00	80,000,000	
	1조원초과	950,280,406,880	0.00010	1.00	95,028,041	
합 계		1,950,280,406,880			401,873,041	
1. 평 가 수 수 료	1.0배분	$401,873,041 \times 128,275,628,880 / 1,950,280,406,880 = 26,432,361$			26,432,361	
	0.8배분	$401,873,041 \times (1,822,004,778,000 / 1,950,280,406,880) \times 0.8 = 300,352,543$			300,352,543	
	기초수수료 합 계				326,784,904	
2. 실 비	여비	5일 x 40000원 x 1인			200,000	
	조사비				-	
	발급비				-	
	기타	주거환경분석용역비(1/2)			13,000,000	
	실비 합계				13,200,000	
합 계		1.기초평가수수료 + 2.실비(천원미만 절사)			339,984,000	
부가가치세		10%			33,998,400	
총 계		합계 + 부가가치세			373,982,4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감정평가보수)		기 납부된 착수금을 제외한 감정평가보수 중 청구액			373,982,400	

제 10 호 안 건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

■ 안 건 상 정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9차 사업비를 청구, 인출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합니다.

구 분	9차 (2026. 06. 22 예정)
청구금액	금12,856,199,201원
보증 수수료	금477,351,732원
내역	- 조합운영비 - 기납부 허그 보증수수료 - 기본이주비 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 종후 재감정 수수료 예치금 - 설계용역비 - 명도, 수용재결, 이주관리 등 용역비 - 석면 감리/측정, 지장물 관련 용역비 - 청산자 소유권 이전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 - 전기 등 원인자 부담금 외

※ 1. 항목별 오기 정정은 조합장에게 위임함.

2. 첨부 내역 하단 부담금중 “통신 등 추정액 금440,000,000원”은 한전, 도시가스처럼 관리청이 내역을 작성하여 부과하나 임시 5일장의 우선 이전이 필요하여 용역사의 추정금액으로 인출 요청하며 차액은 추후 HUG 협의에 따라 처리함.

■ 의 결 근 거

- 조합 정관 제28조 (이사회의 사무)

■ 의 결 사 항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부 서류

- 사업비 청구내역 총괄표

첨부 사업비 청구내역 총괄표

< 9차 사업비 청구 총괄 내역 2026. 06. 22 >

구 분		신청 금액(원)	비 고
조합운영비	조합	40,000,000	2026. 06월
8차 보증수수료	HUG	85,796,300	2026. 06월
사업비 대출이자	경남은행외 대주	950,125,508	2026. 06월
기본이주비 이자	하나은행	139,690,057	2026. 06월
기본이주비 이자	NH농협은행	131,795,326	2026. 06월
촉진비 대출이자	투에스제철차	335,510,136	2026. 03. 05 대출이자 4.54% (spread 1.74% + CD수익율 2.80%)
보상비	지역협력센터	241,413,500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	세입자 손실보상	16,310,582	주거, 동산이전비
명도/수용재결	법무법인 현	988,453,400	지토위 결과 등
이주관리	지코피앤씨	1,141,800,000	이주율 70% 기준
지장물관련	이오산업개발	388,080,000	계약금 20%
석면감리	대한환경분석기관	99,660,000	계약금 20%
석면측정	한국친환경연구소	89,760,000	약금 20%
감정평가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373,982,400	종후자산 재감정 예치금
	하나감정평가법인	373,982,400	종후자산 재감정 예치금
교통영향평가	대건알앤디	52,800,000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비	유선&진양	2,781,952,592	기인가 및 설계변경
hug 대행	에스에이치프라퍼티	5,500,000	8/9차
취득세 및 보수	우영법무사	192,458,400	유성성결교회 협의취득
	우영법무사	3,795,549,750	재결청산자
회계기장료	정일회계법인	1,320,000	2026.4~6월
법률자문비	법무법인 현	660,000	2026.4~6월
관리비	조합	1,980,000	사무실 임대료
신문광고	경향/문화	1,050,000	무허가건물관련 2차 공고
부담금	한전(전기)	12,673,320	폐전, 이설
	씨엔씨티(도시가스)	173,895,530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철거공사비
	통신 등 추정액	440,000,000	한국통신 등 원인자 부담금
합 계		12,856,199,201	대출 누계 ₩294,643,645,189

제 11 호 안 건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

■ 안 건 상 정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세입자 주거, 동산이전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을 의결합니다.

■ 첨부 서류

- 보상비 지급 내역
- 용역비 지출 내역

첨부 - 보상비 지출 내역

① 주거이전비 대상자 명단

(2026.05.29. 기준)

연번	권리소재지			성명	대상자 (인원수)	전입날짜	금액	비고
	지번	건물 명칭	호수					
1	11-55, 11-56			이*강	1	2006.03.06	10,522,200	

② 동산이전비 대상자 명단

(2026.05.29. 기준)

연번	권리소재지			성명	계약 면적	전입날짜	금액	비고
	지번	건물 명칭	호수					
1	11-55, 11-56			이*강	35.8	2006.03.06	1,361,972	
2	273-01		3층	엄*랑	152.65	2017.01.09	2,723,945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소유주확인)
3	277-02	하이빌	202호	김*자	52	2017-09-2 8	1,702,465	
합 계							5,788,382	

③ 지역협력센터 이전비 내역

구 분	구조 및 규격	1. 이전비 감정평가액			2. 에어컨 잔존가치 추가이전비	1+2	
		제일	중앙	평균			
유 성 구	마을 자치과	사단법인유성구 자원봉사센터	48,490,000	53,370,000	50,930,000	1,300,000	136,343,500
		장대오장	43,090,000	43,090,000	43,090,000	.	
		마을자치과			-	41,023,500	
	운영지 원과	장대 스마트워크센터	3,320,000	3,320,000	3,320,000		3,320,000
	교육 과학과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48,450,000	48,450,000	48,450,000		48,450,000
		청소년범죄예방 위원 대전 유성구지구위원 회	800,000	800,000	800,000		800,000
단 체	사회 돌봄과	대전 행복나눔 무지개푸드마켓6 호점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생활 보장과	대전 유성 지역자활센터	38,740,000	41,760,000	40,250,000	1,400,000	41,650,000
		대전 유성 지역자활센터 (단미공방)	4,300,000	4,300,000	4,300,000		4,300,000
	마을자 치과	온천2동 자율방범대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총합계		193,740,000	201,640,000	197,690,000	43,723,500	241,413,500	

첨부 - 용역비 지출내역

구 분	상 호	금 액 (원)	비 고
설계용역비	유선&진양 엔지니어링	2,781,952,592	설계 용역비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	(주)지코피앤씨	1,141,800,000	이주율 70% 완료시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주)대건알앤디	52,800,000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시 40%
명도소송	법무법인(유) 현	61,600,000	첨부 참조
수용재결	법무법인(유) 현	814,103,400	
수용재결조서작성	법무법인(유) 현	112,750,000	
허그 업무대행	SH프라퍼티	5,500,000	허그 행정대행 용역비(8차,9차)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우영법무사법인	192,458,400	유성성결교회
	우영법무사법인	3,795,549,750	수용재결 청산자
보상비	세입자	16,310,582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부담금	한국전력공사	12,673,320	임시시장 부지원인자 부담금
	씨엔시티에너지(주)	173,895,530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철거공사비
신문광고	(주)경향신문사, (주)문화일보	1,050,000	무허가건물 관련 2차 광고
합 계		9,162,443,574	

첨부 - 지역협력센터 보상금

'신뢰와 공정으로 고객과 함께 여는 100년'



수 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참 조)

제 목 유성구 관변단체 이전손실 감정평가 관련 잔존가치 산정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문서번호 「장대B 조합 제2026-115호」로 의뢰하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장대동 282-15번지” 유성구 관변단체 에어컨 잔존가치 및 물품이전비 누락분 검토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 래 -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및 규격	물건의 종류	수량 (대)	단가	금액	비고
1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시스템에어컨	38	829,000	31,502,000 ✓	잔존가치
				11	595,000	6,545,000 ✓	잔존가치
		이전비 등	스탠드에어컨	2	1,491,000	2,982,000 ✓	잔존가치
2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스탠드에어컨	2	일괄	1,400,000	이전비용 (자활센터)
3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바퀴의자 18대, 1인용의자 1대 책상 2대, 1인용 쇼파 1대 3단 캐비닛 1대, 5단 캐비 2대 PC 3대, 조리실 실습대 2대 캐비닛(찬장) 1대, 금고 1개 회의용 탁자 1대	-	일괄	1,300,000	이전비용 (자원봉사센터)

끝.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접수/발송 차장 장희정

담당감정평가사 모현민, 정해욱

총무이사 변효성

시 행 제일-26-00533 / 2026-04-21(화)

주 소 (06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8, 3층 facc@facc.co.kr

전 화 02-3019-1200 / 전 송 02-3019-1234~8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수 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참 조 -

제 목 유성구 관변단체 이전손실 감정평가 관련 잔존가치 산정 회신

1. 항상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문서번호 「장대B 조합 제2026-115호(2026.04.21.)」와의 관련입니다.

3. 상기대호로 요청하신 장대B구역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유성구 관변단체 이전손실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잔존가치 등을 적용한 에어컨 이전비 적용단가 및 물건이전비 산정 누락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및 규격	물건의 종류	수량 (대)	단가	금액	비고
1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시스템에어컨	38	829,000	31,502,000 ✓	잔존가치
				11	594,000	6,534,000 ✓	잔존가치
		이전비 등	스탠드에어컨	2	1,491,000	2,982,000 ✓	잔존가치
2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스탠드에어컨	2	일괄	1,400,000	이전비용 (자활센터)
3	장대동 282-15	이전비 등	바퀴의자 18대, 1인용의자 1대 책상 2대, 1인용 쇼파 1대 3단 캐비닛 1대, 5단 캐비 2대 PC 3대, 조리실 실습대 2대 캐비닛(찬장) 1대, 금고 1개 회의용 탁자 1대	-	일괄	1,300,000	이전비용 (자원봉사 센터)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



담당자 : 감정평가사 유 병 재

시행 중앙 082604-2211(2026.04.21.)

(우)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5, 5층 (탄방동, 그랑수아빌딩)

전화 042)365-0900 전송 042)365-0901 / <http://www.jaa.co.kr>

첨부 - 유선&진양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비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615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2, 302(삼성동, 원경빌딩) TEL. 82. 2. 3147.3319 FAX.82. 2. 3147. 3099

문서번호 : 유선 제2026- 05 - 046 호

시행일자 : 2026. 05. 29.

수 신 : 장대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제 목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 변경계약 및 기성청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과 수행중인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과 관련하여 ① 최초 사업 시행인인가 후 면적증가 정산, ② 시공자 현대건설과의 V.E 협업 ③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기존 계약 대비 70% 금액에 공동실행 모형제작 2건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요청드리며, 금회기성을 청구하오니 검토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 약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나. 총계약금액 : 일금 일백삼십일억육천칠백육십이만사천오백팔십오원정(₩13,167,624,585)-VAT별도

다. 신청 금액 : 일금 이십칠억팔천백구십오만오천이천오백구십이원정(₩ 2,781,952,592원)-VAT포함 (vat포함)

구분		유선(51%)	진양(49%)	합계	비고	
금회 청구액	최초 인가 면적	면세 공급가	369,938,447	355,431,057	725,369,504	
		과세 공급가	455,769,095	437,895,797	893,664,892	과세 55.1974%
		VAT	45,576,909	43,789,580	89,366,489	
	증가분	소 계	871,284,451	837,116,434	1,708,400,885	
	설계변경 계약시	면세 공급가	232,467,716	223,351,335	455,819,051	
		과세 공급가	286,403,322	275,171,820	561,575,142	과세 55.1974%
		VAT	28,640,332	27,517,182	56,157,514	
		소 계	547,511,370	526,040,337	1,073,551,707	
		합 계	1,418,795,821	1,363,156,771	2,781,952,592	

※ 본 변경계약

라. 입금 계좌:국민은행 (818-25-0022-190)예금주: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KEB하나은행 (173-890043-68204)예금주 :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첨부 : 1. 변경계약 요청금액 산출근거 별첨

· 2. 업체별 통장 사본 각1부.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첨부 - (주)지코피앤씨 이주율 70% 완료 시 용역비

“지키자 코리아! 지키자 대한민국!”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임은수 귀하
(경유)

제 목 :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 청구의 건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서 제4조 (용역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약금액 : 일금 삼십사억육천만 원정(₩ 3,460,000,000 / VAT별도)

나. 금회청구금액 : 일금 삼억사천육백만 원정(₩ 346,000,000 / VAT별도)

(단위 : 원)

구 분	용역비 지급시기	지급비율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계 약 금	계약 및 업무착수 시	10%	346,000,000	34,600,000	완료
1차 중도금	거주자(점유자)조사서 납품 시	20%	692,000,000	69,200,000	완료
2차 중도금	범죄예방센터 구축 시	20%	692,000,000	69,200,000	완료
3차 중도금	이주율 30% 완료 시	10%	346,000,000	34,600,000	청구완료
4차 중도금	이주율 50% 완료 시	10%	346,000,000	34,600,000	청구완료
5차 중도금	이주율 70% 완료 시	10%	346,000,000	34,600,000	금회청구
6차 중도금	이주율 90% 완료 시	10%	346,000,000	34,600,000	-
잔 금	이주율 100% 완료 시	10%	346,000,000	34,600,000	-
계			3,460,000,000	346,000,000	-

다. 입금계좌번호 : [426-910011-71404 하나은행] (주)지코피앤씨

끝.

주식회사 지코피앤씨 대표이사



담당자 허 한 별

대표이사 유 지 민

시행 (주)지코피앤씨 제2026-043호 (2026. 05. 11)

우 056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00, 4층 (석촌동, 그랜드빌딩)

전화 02)552-0996 전송 02)3431-0997 공개부분 : 공개/비공개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주현황보고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주시작200일차)

○ 이주기간 : 2025.11.10 ~ 2026.03.10 (4개월간)

○ 경산자 등 비합조로 인하여 세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세대수	이주계획서 준수현황				구분	거주 세대	이주현황										
		합일 집수	%	누락 집수	%			미 집수	%	이주완료 누계	%	합일여주 완료세대	%	직할이주 대상세대	%	미이주 세대	%	
조합원	단독	158	0	0.0%	158	100.0%	0	0.0%	본인가주	143	139	97.2%	0	0.0%	0	0.0%	4	2.8%
	합합건물	278	0	0.0%	278	100.0%	0	0.0%	세입자 거주	231	223	96.5%	0	0.0%	1	0.4%	8	3.5%
	토지	20	0	0.0%	20	100.0%	0	0.0%	조합원 영입권	77	75	97.4%	0	0.0%	0	0.0%	2	2.6%
									영입권 세입자	342	324	94.7%	2	0.6%	5	1.5%	18	5.3%
									경산자 영입권	1	1	100.0%	0	0.0%	0	0.0%	0	0.0%
	이주계획서 합계	456	0	0.0%	456	100.0%	0	0.0%	합계	794	762	96.0%	2	0.3%	6	0.8%	32	4.0%
경산자									본인 거주	29	16	55.2%	0	0.0%	2	6.9%	13	44.8%
									세입자 거주	89	85	94.2%	0	0.0%	1	1.4%	4	5.8%
									영입권 세입자	117	103	88.0%	2	1.7%	2	1.7%	14	12.0%
									조합원 영입권	1	1	100.0%	0	0.0%	0	0.0%	0	0.0%
									경산자 영입권	19	11	57.9%	0	0.0%	4	21.1%	8	42.1%
									합계	235	198	83.4%	2	0.8%	9	3.8%	39	16.6%
총 계	557					총 계	1029	958	93.1%	4	0.4%	15	1.5%	71	6.9%			
합일 이주완료세대	272-02번지 1층, 278-11번지 1층, 278-08번지 1층, 282-03번지 1층																	
285-15번지 합의센터	0	2층 광대스마트워크센터 공기유입(請기불입)																
특이사항	* 영도소송 진행 상황* (총 대상자 : 781) (영도소송 미결수자 : 조합원 및 조합원 영입권 대상자) 1차 결수 : 2025.09.15 / 2025.09.16 (대상 : 509) 2차 결수 : 2025.11.14 (대상 : 226) 3차 결수 : 2025.12.09 (대상 : 8) 4차 결수 : 2025.12.30 (대상 : 17) 5차 결수 : 2026.03.11 (대상 : 20) * 위주 진행상황* 2026.04.20 거론 대상 : 530																	
	* 가처분 결수 상황* 1차 결수 : 2025.12.12 (대상 : 77) - 집행 일정 : 2026.01.16 (1차) - 집행 일정 : 2026.02.03 (2차) - 집행 일정 : 2026.02.05 (3차) - 집행 일정 : 2026.02.11 (4차) - 집행 일정 : 2026.02.12 (5차) - 집행 일정 : 2026.03.10 (6차) - 집행 일정 : 2026.03.17 (7차)																	

장대B구역 천변(임시상가 부지) 이주 현황 보고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주시작200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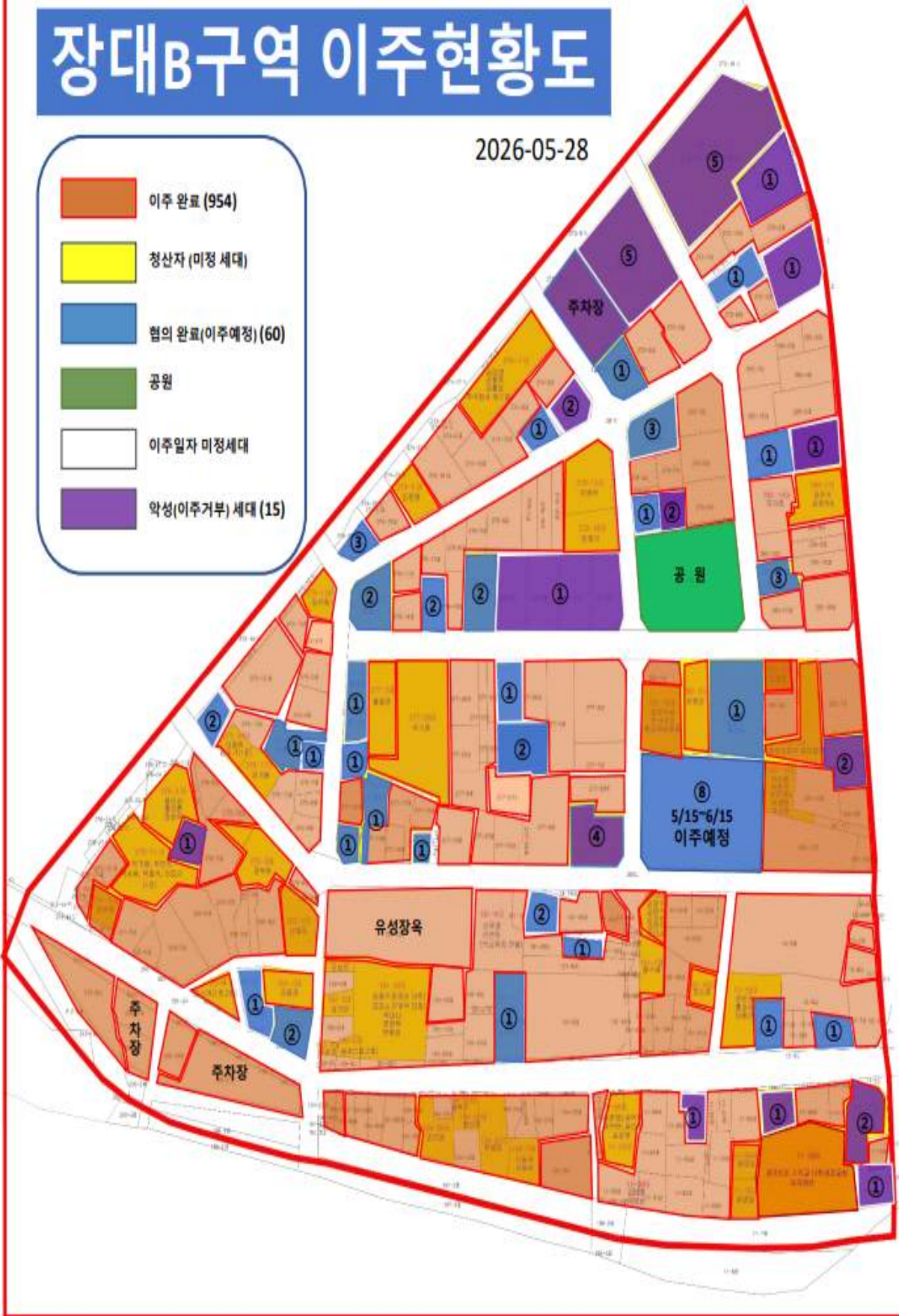
○ 이주기간 : 2025.11.10 ~ 2026.03.10 (4개월간)



구분	거주 세대	이주 완료	%	이주 미완료	%	비고	
조합원	본인 거주	33	33	100%	0	0%	
	세입자 거주	39	38	97%	1	3%	노순남
	조합원 영입권	14	14	100%	0	0%	
	영입권 세입자	40	39	98%	1	3%	보물섬
합계	126	124	98%	2	2%		
경산자	본인 거주	8	7	88%	1	13%	송덕영
	세입자 거주	21	20	95%	1	5%	곽형식(대전기통검)
	경산자 영입권	2	2	100%	0	0%	
	영입권 세입자	20	18	90%	2	10%	대전기통검, 장
합계	51	47	92%	4	8%		
총 계	177	171	97%	6	3%		
특이사항	* 영도소송 진행 상황* 1차 결수 : 2025.09.15 / 2025.09.16 (천변도로 소송 대상자 : 71건) 2차 결수 : 2025.11.14 (천변도로 소송 대상자 : 56건) (영도소송 미결수자 : 조합원 및 조합원 영입권 대상자) - 집행 일정 : 2026.01.16 (1차) - 집행 일정 : 2026.02.03 (2차) - 집행 일정 : 2026.02.05 (3차) - 집행 일정 : 2026.02.11 (4차) - 집행 일정 : 2026.02.12 (5차) - 집행 일정 : 2026.03.10 (6차)						

장대B구역 이주현황도

2026-05-28



첨부 - (주)대건알앤디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시 40%

주식회사 대건알앤디

(35234) 대전광역시 둔산로70, 신우빌딩 6층 / 전화 (042)482-7740. 팩스(042)485-7741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참 조 :
제 목 : 장대B구역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계약 중도금 청구 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대B구역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계약」에 대하여 중도금을 청구하오니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구서
2. 통장사본 -끝-

주식회사 대건알앤디 대표이사 황현중



작성자 박제애 담당자 황규상 대표이사 황현중

시행 주식회사 대건알앤디 2026-05-03호 (2026. 05. 21)

우 3523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70, 신우빌딩 6층

TEL.(042) 482-7740, FAX(042)485-7741

첨부 - 법무법인(유한)연

수용재결 조서작성용역						
구분	내용	금액	기지금액	금회청구액	잔액	비고
계약금	10%	25,000,000	25,000,000			
중도금 조사납품시	70%	175,000,000	122,500,000	52,500,000		분할 지급
수용재결 신청시	20%	50,000,000		50,000,000		
합계		250,000,000	147,500,000	102,500,000	-	VAT 별도

수용재결						
구분	내용	인당 금액	기지금액	금회청구액	잔액	비고
계약금	20%	1,860,000				
지토위 접수시	수용재결대상	552	205,344,000			
	협의, 이주완료자	295	329,220,000	566,184,000		
	수용재결자	230	256,680,000			
지토위 재결서수령 공탁 후	미이주 협의자	27	30,132,000		30,132,000	이주완료시 청구
	협의, 이주완료자	295	82,305,000			
	수용재결자	230	64,170,000			
중도위 정본 수령시	미이주 협의자	295	7,533,000		7,533,000	이주완료시 청구
	협의, 이주완료자	230	27,435,000			
	수용재결자	230	21,390,000		21,390,000	
합계		552	1,026,720,000	225,060,000	740,094,000	61,566,000

명도소송						
구분	내용	세대당 금액	기지금액	금회청구액	잔액	비고
소제기시 80%	1차 :청산자/영임권자	481	769,600,000			2025. 09. 24
	2차 정산자,조합원의 세입자	216	345,600,000			2025. 12. 22
	3차	35	56,000,000		56,000,000	
잔금		732	292,800,000		292,800,000	이주 완료 후 청구
	합계	732	1,464,000,000	1,115,200,000	56,000,000	292,800,000

구분	금액	기지금액	금회청구액	잔액
총금액	2,740,720,000	1,487,760,000	898,594,000	354,366,000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명도소송

HYUN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현

0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J-Tower 4층, 5층, 6층, 13층
telephone 02 2673 3800 facsimile 02 2673 3838
www.hyunlaw.co.kr hyunlaw 02@gmail.com

2025년 5월 28일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발 신 : 법무법인(유) 현 건설부동산그룹 담당변호사 안광순, 문형식
제 목 : 용역비(명도소송) 청구의 건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과 우리법인 간 2025. 6. 10.자로 체결한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등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5조 제②항(명도소송 용역)의 지급비율에 따른 용역비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오니 첨부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금액(원)	비고
추가 명도소송 소제기 용역비	61,600,000	35세대 ¹⁾ × 2,000,000원 × 0.8(지급비율) × 1.1(부가가치세) ※ 잔여 용역비(20%)는 이주완료 시 청구예정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세금계산서, 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무법인(유) 현
담당 변호사 안 광 순



문 형 식



1) 상세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수용재결

HYUN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현

0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J-Tower 4층, 5층, 6층, 13층
telephone 02 2673 3800 facsimile 02 2673 3838
www.hyunlaw.co.kr hyunlaw 02@gmail.com

2025년 5월 28일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발 신 : 법무법인(유) 현 건설부동산그룹 담당변호사 안광순, 문형식
제 목 : 용역비(수용재결) 청구의 건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과 우리 법인 간 2025. 6. 10.자로 체결한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등 용역계약서 제5조 제①항(수용재결)의 지급비율 등에 따른 용역비 **814,10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오니 첨부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총 552인) ¹⁾	금액(원)	비고
① 협의자 중 이주완료 한 295인 ²⁾ 의 용역비	548,700,000	295인 × 1,860,000원 × 1(지급비율) ³⁾
② 협의자 중 이주완료 하지 않은 27인의 용역비	10,044,000	27인 × 1,860,000원 × 0.2(지급비율) ※ 잔여 용역비(80%)는 이주완료 시 청구예정
③ 수용재결자 230인의 용역비	406,410,000	230인 × 1,860,000원 × 0.95(지급비율) ※ 잔여 용역비(5%)는 중토위 정본수령 시 청구예정
④ 기지급 용역비	225,060,000	2025.06.26. 계약금(20%) 지급 605인(추정) × 1,860,000원 × 0.2(지급비율)
금번 청구 용역비	814,103,400	(① + ② + ③ - ④) × 1.1(부가가치세)

1) 상세 내역은 별지 1 내지 3 기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22인(협의완료자 346인 - 중복 24인) - 27인(협의 완료하였으나 미이주자) = 295인
3) 관련 근거 : 수용재결, 명도소송 등 용역계약서 제5조 제①항 단서조항 2. "수용재결 신청 전에 을의 노력 등으로 신속하게 원만한 보상협정이 완료되어 이주 퇴거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전액 지급한다." 참고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세금계산서, 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무법인(유) 현

담당 변호사 안 광 순



문 형 식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재결조서

HYUN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현

0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J-Tower 4층, 5층, 6층, 13층
telephone 02 2673 3800 facsimile 02 2673 3838
www.hyunlaw.co.kr hyunlaw 02@gmail.com

2025년 5월 28일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발 신 : 법무법인(유) 현 건설부동산그룹 담당변호사 안광순, 문형식
제 목 : 용역비(수용재결을 위한 조서작성 용역) 청구의 건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과 우리법인 간 2025. 3. 19.자로 체결한 수용재결을 위한 조서작성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3조 따른 잔여 용역비 **11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오니 첨부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금액(원)	비고
① 용역비 총액	250,000,000	
② 기지급 용역비 01	25,000,000	2025.04.29. 계약금(10%) 지급
③ 기지급 용역비 02	122,500,000	2025.06.26. 중도금(70%) 중 일부 지급
청구 용역비	112,750,000	(① - ② - ③) × 1.1(부가가치세)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세금계산서, 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무법인(유) 현
담당 변호사 안 광 순



문 형 식



첨부 - (주)에스에이치프라퍼티 허그 행정대행 용역비(8차,9차)



(주)에스에이치프라퍼티

(우)073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50-19, 2층 / TEL.02-834-3339 / Fax 02-834-3335

문서번호 : SH제2026-05-29호

발신 : (주)에스에이치프라퍼티

수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조 :

제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비 기표(자금청구) 업무 행정대행 8·9회차 용역비 청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비 기표(자금청구) 업무 행정대행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내 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비 기표(자금청구) 업무 행정대행 용역비(8·9회차 / 총 2회분)
2. 청구금액 : 일금 오백오십만원정 (₩ 5,500,000) - VAT 포함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VAT	합계
기표(자금청구) 업무 행정대행	8-9회차	5,000,000 원	500,000 원	5,500,000원
합계		5,000,000 원	500,000 원	5,500,000 원

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 - 104 - 074013 / 예금주 - (주)에스에이치프라퍼티

- 붙임 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통장사본 1부 끝.

2026년 05월 20일

(주)에스에이치프라퍼티 대표이사 구 찬 림 · 임 행 호



첨부 - 우영법무사법인 공공용지협의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비용(유성성결교회)



수 신 : 장대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 유) :

제 목 :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비용 지급요청의 건 (4차)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 요청에 따라 청산자(성결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귀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 소유권이전에 따른 처리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이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비 용	비 고
공 과 금	금 190,192,400 원	-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보 수 료	금 2,060,000 원	
부 가 세	금 206,000 원	
합 계	금 192,458,400 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0637-01-002940 예금주 : 우영법무사법인		

※ 첨부 : 1. 비용내역서 상세내역 1부

우영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전유진



시 행 : 우영 제2026 - 421호 (2026. 05. 21.) 담당자 : 정비사업1팀 반정우 사무장
우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7-6 (서초동,우영빌딩)
전화번호 : 02) 599-8081, FAX : 02) 599-8083, 전자우편 : jyjlaw@hanmail.net

첨부 - 우영법무사법인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처분 신탁등기 처리비용



수 신 : 장대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 유) :

제 목 : 수용(25수용0037호)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처리비용 지급요청의 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 요청에 의거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25수용0037호에 따른 청산대상자 총73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귀 조합의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의한 신탁등기 처리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이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공과금	금 3,665,283,350 원	제세공과금 포함
보수료	금 118,424,000 원	
부가세	금 11,842,400 원	
총합계	금 3,795,549,750 원	
합계	금 3,795,549,750 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0637-01-002940 예금주 - 우영법무사법인

※ 첨부 : 1. 비용내역서 상세내역 1부

우영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전유진



시 행 : 우영 제2026 - 428호 (2026. 05. 26.) 담당자 : 정비사업1팀 반정우 사무장
우 066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7-6 (서초동,우영빌딩)
전화번호 : 02) 599-8081, FAX : 02) 599-8083, 전자우편 : jyjlw@hanmail.net

첨부 -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3418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대덕유성지사 고객지원부 대리 유영준

☎ 042-333-0223
june615@kepcoco.kr

FAX 042-333-0218

문서번호 대유지(고객)-75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유성신협 신사옥 601호

시행일 2026. 5.27.

수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조

34175

제목 배전선로 이설 관련 고객시설부담금 청구[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력사업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이 요청하신 배전선로 이설에 대한 고객시설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0-2 외 7필지

나. 접수번호 : 2930-20260511-010103 (공사번호 : 2934-2026-3437)

다. 시설부담금 청구금액 : 12,673,320원 (부가세 포함)

라. 납부기한 : 2026. 6. 8(월)

※ 납기 이후에도 납부는 가능하나 납부 후 공사가 진행됨

마. 납부방법 : 청구서 내 인터넷지로 납부 또는 고객지정계좌 입금

바. 정산안내 : 설계금액으로 고객부담금을 청구하며 공사준공 후 결과에 따라
고객부담금 확정 및 차액 정산(환불 또는 추가청구 발생 가능)

3. 기타 문의사항

가. 고객부담금 산정 및 공사 진행사항 : 배전운영부 김근배 (☎042-333-0288)

나. 고객부담금 청구 및 납부 관련사항 : 고객지원부 유영준 (☎042-333-0223)

붙임 : 1. 공사비 청구서 1부

2. 공사비 산정 내역서 1부. 끝.

대덕유성지사장

첨부 - 대전씨엔씨티 도시가스



수 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참 조 :
제 목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자산손실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1단계 철거공사비 납부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대B 조합 제2026-133호(2026.05.08.)와 관련,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일원 중 자산손실 비용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1단계 철거공사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구금액 : 73,673,470원

구분	공사내용	철거공사비	설계감독비	자산손실비
철거	20개소 분기배관 캡 마감 및 1개소 관로배관 단관처리	79,038,200	2,097,000	
자산 손실	공급시설 관로 및 분기 107필지			92,760,330
합계	-	173,895,530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나. 납부방법 : 씨엔씨티에너지(주) 법인통장 납부(한국씨티은행/통장번호 : 401-50786-240)

다. 업무협조 요청사항

- 상기 비용 납부 시 통보(CNCITY에너지 오세진 010-9400-6829)

- 첨부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철거,이설공사 현황(장대B구역-1단계 철거) 1부.
2. 장대동191 포함21건 도시가스 공급시설 철거 현황(장대B구역 1단계) 예산서 1부.
3. 장대B구역 자산 손실 명세 리스트(2026.5.29. 기준) 1부.
4. 장대B구역 1단계 철거_사진 및 위치도 1부.
5. 씨엔씨티에너지(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사본 1부.
6. [별표 16]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부.
7. EOCs 안내 팜플릿 1부. 끝.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수신처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 공급솔루션 / 담당자 : 오세진

문서번호 : 공급솔루션-대외공문시행문-202606-00749 (시행 : 2026-06-01)

우 34800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충촌동, 씨엔씨티에너지) / www.cncityenergy.com

전화 : 042-336-5100 전송 : 042-336-59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28-2 (방배,현암빌딩)2F 전화) 02-532-0009 / 전송) 02-532-0067

문서 번호 : EO(장대B) 제 2026-08호
문서 시행일 : 2026년 06월 01일
수신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조 : 담당자
제목 : 원인자부담금 예상금액 집행 요청의 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물의 원인행인자 부담으로 하는 공급시설의 철거 및 복구, 이설, 변경공사, 잔존가치보상금 등에 대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토 및 설계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초래 예상되는 바,

3.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예상 비용을 권리권자에게 확인하여 산출 요청하오니, 설계완료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예상금액 : ₩ 400,000,000원(부가세별도)
- 세부 산출금액(부가세별도)
 - ① 한국통신(KT,중계기포함) : ₩190,000,000원
 - ② SKT, SKB, LGU+, 지역방송, 중계기 등 : ₩200,000,000원
 - ③ 소음측정기(한국환경공단) : ₩10,000,000원

주식회사 이오산업개발
대표이사 위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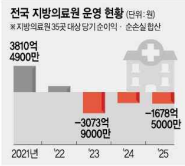


무너지는 지방의료원... “6350억 적자에 월급도 못줘”

<3년간>

코로나 최전선 지켰더니 빛더미 전국 35곳 적년 적자 1678억 원 체불임금 부산 33억·속초 20억

감염병 전담 지정매 외래 중단 해제한 후에도 환자 안 돌아와 병상 가동률 60%대로 떨어져



■ ‘코로나19 극복 일등 공신’이라, 의정활동 속에서도 진료실 불을 끄지 않았던 전국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지난해 1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공공 의료 체제의 핵심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에서는 토사구팽(土沙狗烹) 당할 것 아니

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바리셀스 다들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78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601억5600만 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누적

적자만 6353억9600만 원에 달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곳도 지난해 7곳에 달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한때 직원들의 수당과 급여 체불 금액이 20억7100만 원에 달했다. 부산의료원도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 33억4483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귀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체불금액이 발생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 김영환 부산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가 나기도 있었고 적자 폭이 이렇게 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로 몰린 데에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중단하되 시피 하고, 입원하고 있던 병동 환자의 대부분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022년 6월에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 병원이 해체됐지만 만 3년이 지난 뒤에도 환자들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이라는 이미지의 악영향으로 환자들이 사이에서는 지방의료원 기피 현상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환자들한테 병원을 옮기라고 내뿜다시피 하니 욕설과 항의가 빗발쳤었다”며 “악감정을 가지고 다닌 환자들 다시 돌아오는 건 만사하고”고 하소연했다. 국민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

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6.5%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조사된 공공병원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병상가동률이 80.5%에 달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병상가동률은 50%를 밑돌았다. 지난해 64.2%까지 오르면 좋지만 병원 유지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것이다. 김영환은 “지역의료원은 비급여 진료 제한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은 데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만의 예산을 마련 해주고 지원도 늘려야 지금의 상황이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공공소각장 건립기간 11년→8년으로 단축” 기후부, 조기 확충 방안 발표

■ 정부가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건립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쓰레기 원정 처리’ 사태를 해결하고, 2030년 전국 직매입 금지 조치가 선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기우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입지 선정부터 공사가 시작 단계에 걸친 행정절차의 과감한 단축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상 확대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1년 8개월이 소요되는 건립 기간을 8년 2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 시설을 증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해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 단계에서는 시설 용량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에 사업 변동성을 줄인다. 복합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순차 시행하던 방식에서 동시 처리로 보상으로 바꾸고, 설계적정성 검토도 줄여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우 시설 건립의 최대 난관인 주민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력 유인도 대폭 강화한다.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자치단체가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해 줄 때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대신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지원 범위를 기존 소각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확충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전액 확대한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시에서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노지운 기자

‘스벅 탱크’ 파문에 마케팅업계 긴장 “홍보문구 단어 선택 조심하라” 지침

일부 기업선 불매운동 동참도 “대중 윤리적 기준 매우 높아져”

■ 스타벅스코리아와 무신사가 이른바 ‘역사 조롱 마케팅’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유행·패션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이 자사 광고 담당자들에게 마케팅 문구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 직접 캠페에서 스타벅스 등 논란이 된 기업 상품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제 최근 마케팅들이 모여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데, 광고주들이 SNS 이벤트 경품에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부 다른 걸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한 마케팅에 제품을 홍보하던 기업도 지난 20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기업의 제품을 계속 소비하는 건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벤트 경품을 다른 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자사 마케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문구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현대인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 중인 20대 A 씨는 “회사에서 스타벅스 논란 이후 마케팅 문구를 조심하라는 공지도 내려왔고”며 “특히 역사와 젠더 이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말했다.

한국의 소비자 다양성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사나 인종차별 논란이 될 법한 마케팅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에 근무 중인 B(25 세)는 “티 의회에서 역사나 인종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 사용까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역사 회화와 논란에 휩싸인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윤리적 기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인정성 없는 사과와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책임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스타벅스 컵 깨며 기원 21일 광주 서구 마담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코리아 기원 기화전행 장소에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자 찌그러진 채 놓여 있다.

열받은 바다... 울여류 평년보다 덥고 비 많이 올듯

기상청 ‘6~8월 날씨 전망’ 발표

■ 울여류는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6~7월에는 비가 전보다 많이 내리고,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의 ‘3개월 날씨 전망’ (6~8월)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월별 평균기온은 6월

21.1~21.7도, 7월 24.0~25.2도, 8월 24.6~25.6도 예상된다. 6~7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분석됐다.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비수확 확률과 낮은 확률은 각각 40%와 10%로 파악됐다. 울여류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이

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서 대기로 열에너지가 공급돼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 순환이 강해진다.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고온다습한 기후 유입이 늘어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현재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경우 덜 더울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은 6~7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노지운 기자

문화일보 광고문의 02-1955-6655

토지등 소유자 소재 확인 2차 공고

1. 1차 공고: 2025년 4월 15일(수) 2. 2차 공고: 2025년 5월 22일(금)

3. 3차 공고: 2025년 6월 12일(수)

4. 4차 공고: 2025년 7월 2일(수)

5. 5차 공고: 2025년 7월 22일(수)

6. 6차 공고: 2025년 8월 11일(수)

7. 7차 공고: 2025년 8월 31일(수)

8. 8차 공고: 2025년 9월 20일(수)

9. 9차 공고: 2025년 10월 10일(수)

10. 10차 공고: 2025년 10월 30일(수)

11. 11차 공고: 2025년 11월 19일(수)

12. 12차 공고: 2025년 12월 9일(수)

13. 13차 공고: 2025년 12월 29일(수)

14. 14차 공고: 2026년 1월 18일(수)

15. 15차 공고: 2026년 2월 7일(수)

16. 16차 공고: 2026년 2월 27일(수)

17. 17차 공고: 2026년 3월 17일(수)

18. 18차 공고: 2026년 3월 27일(수)

2025년 5월 22일

정당구역 자기발행비서업무 조합장 임 우(책임성서)

소셜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심우도

100만부 선착순 마감

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2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3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4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5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6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7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8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1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2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3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4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5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6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7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8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99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회분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100부 선착순 마감 (한권)

문화일보 광고문의 02-1955-6655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가 너였으면 좋겠어”

모든 아이들에겐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는 인생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WE START 후원문의 1577-9572

WE START 어린이가 행복해 세상

WE START 후원문의 1577-9572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 교육,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금 주신 분께는 소득공제는 물론 소식지와 정기레터를 보내드립니다.